

의안번호	2212299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5. 9. 16.
추 계 번호	25C42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 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 109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제한 예외규정 준용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예외조항 준용(안 제30조)
- 개정안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장기요양 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1항¹⁾을 준용할 경우,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중 보험료 체납 횟수가 3회 미만인 외국인은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됨(현행은 보험료 1회 체납 시 급여 이용 정지)
 -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한 보험료 체납 횟수가 현행 '1회 미만'에서 '3회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임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 중 장기요양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2025년 7월 30일 기준 409명임

[표 1] 장기요양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7.30.
급여제한자	276	311	40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체납 횟수에 따른 급여 이용 기준이 완화되면 장기요양 급여 이용이 많아져 장기요양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나²⁾,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확대분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³⁾,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지원(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⁴⁾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장기요양 보험료 체납횟수가 1, 2회인 외국인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분의 20%에 해당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용 인원, 이용량 증가에 따른 급여 지출분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불가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2)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3)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지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박선아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741	sunapark@nabo.go.kr